공 개

의안번호	제108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3. 4. (제 4 차)

의결사항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3. 4.

1. 의결주문

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그간 **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**을 위해 **고정금리·분할상환 대출**에 대해 **낮은 수준**의 **기본요율***을 **적용**하는 등 **인센티브 체계 운영**

* (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·고정금리대출)0.05%, (그 외)0.26~0.30%

○ 그 결과, **고정금리·분할상환 여신관행**이 **시장**에 **안착***되어 **제도 운영**의 **정책적 목적**을 **상당부분 달성**

* 5년↑고정금리·분할상환 주담대 비중(평잔기준) : ('16) 24.1% → **('24) 64.2%**
※ 현재 은행은 신규 주담대를 5년 주기형(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) 위주로 판매 중

□ 반면, **가계부채 총량관리*** 하 **일부 차주**에게 **대출집중**시 **다른 차주**의 **금융접근성**이 **제한**되는 바, **고액 주담대**에 대한 **관리 강화 필요**

*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('25.3Q 89.3%, 선진국 평균 약 70%)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 연간 가계부채 공급목표를 수립 (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관리)

➡ **고액 주담대**에 대해서는 **높은 출연료**를 **부과**하여 **금융기관**의 **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**이 **감소**하도록 **유도**

※ **동 내용**은 **관계부처**(기재부·국토부·금융위) **합동 「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」**('25.9.7일)을 통해 **旣 발표**

3. 주요골자

□ **현행 대출유형**에 따라 **차등 부과**되는 **출연금 기본요율**을 **대출금액**에 따라 **차등 부과**하는 것으로 **개편**

○ **(현행) 대출유형**에 따라 **차등 부과**

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· 고정금리대출	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· 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		
	주택도시기금 대출	금융회사 대출	
		주택 임차 목적 외	주택 임차 목적
연 0.05%	연 0.26%	연 0.30%	연 0.26%

○ **(개선) 대출금액**에 따라 **차등 부과**

구분 (비중)	기본요율
평균 대출액*의 0.5배 이하 (14.8%)	0.05%
평균 대출액의 0.5배 초과 ~ 1배 이하 (29.8%)	0.13%
평균 대출액의 1배 초과 ~ 2배 이하 (35.7%)	0.27%
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(19.6%)	0.30%

* (참고) '24년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: 2.33억원

※ **제도개선 이후 실제 출연료 수입 증감 추이**를 보아가며 **필요시 출연료율 조정** 등 **추가 보완**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기재부 6차 부담금심의위원회 의결완료
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(규제 미포함)

라. 2026년도 제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'26.2.26.) 심의필

마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'26.1.16. ~ 2.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<별 지>

총리령 제 호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용어의 정의 및 구분		요율
1. 기준요율	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.5배 이하인 경우	연 0.05
	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.5배를 초과하고,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 이하인 경우	연 0.13
	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를 초과하고,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 이하인 경우	연 0.27
	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를 초과하는 경우	연 0.30

별표 1 비고란 제1호를 “신규대출금액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의 대출금액을 말한다. 다만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은 약정금액 전체를 신규대출금액으로 본다.”로 하고,

제2호를 “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이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금융기관(「은행법」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)이 전년도에 취급한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신규대출금액 합계를 취급건수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의 취급건수는 한 건으로 본다.”로 하고,

제12호를 신설하여 “기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하는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과 해당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신규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최초 통

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초 통지하는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”로 하고,

종전의 규정 별표 1의 제12호 내지 14호를 내용변경 없이 이 규정 제13호 내지 15호로 한다.

별표 2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준요율	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	연 0.20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.5배 이하인 경우	연 0.05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.5배를 초과하고,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 이하인 경우	연 0.13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를 초과하고,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 이하인 경우	연 0.27
	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를 초과하는 경우	연 0.30

별표 2 비고란 제2호 후단 중 “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”를 “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통지한 달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금융정책과
연 락 처	02-2100-1691